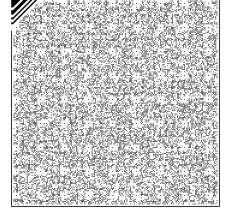




환경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배출허용총량 재할당 도래 대상 총량관리사업장 할당신청서 제출 안내

1. 귀 사업장·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이 금년 12월에 종료되어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(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**2023~2027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**하고자 하오니, **신청서(붙임2)를 작성**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**2022.9.20.(화)까지** 한국환경공단(apecr@keco.or.kr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재할당이 필요한 수도권역 지자체(서울·경기·인천)에서도 동 문서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'23~'27년도 재할당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사업장에 필요 서류 안내 및 재할당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재할당 대상 사업장 명단 1부.
 2. 총량관리사업장 할당신청서(제출양식) 1부.
 3.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 기준 및 종류 1부.
 4. 배출허용총량 산정 및 할당방법 1부. 끝.

환경부장관



수신자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등 83개소 대표 귀하, 수도권대기환경청장(대기총량과장), 한국환경공단이사장, 서울특별시장(대기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환경안전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장(대기보전과장)

주무관 이현민 서기관 대결 2022.8.26.
최재웅

협조자 파견직 이선중

시행 대기관리과-3824 (2022. 8. 26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(5층) / http://me.go.kr

전화번호 044-201-6908 팩스번호 044-201-6915 / light@me.go.kr / 비공개(7)